## 6·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기웅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233

발의연월일: 2024. 9. 24.

발 의 자:김기웅・우재준・백종헌

한기호 • 유영하 • 유용원

김 건 · 김형동 · 김종양

권영세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북한은 6·25전쟁 발발 3일째인 6월 28일 서울을 점령한 후부터 미처 피난을 떠나지 못한 비무장 상태 남한 민간인들을 북한으로 납치하였음. 6·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의보고서에 따르면 6·25전쟁 기간 동안 납북자는 95,456명이며, 전시납북자로 심의·의결한 건은 총 4,777명에 달함.

북한은 납북범죄를 단호히 부인하며 현재까지 납북자들의 생사조차확인해 주지 않고 있음. 북한에 의해 납치된 10만여 명의 납북자와 그피해 가족들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으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음.

이에 6·25전쟁 중 벌어진 납북사건의 진상과 납북자송환문제를 국민께 알리고, 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매년 6월 28일을 국가기념일인 '6·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'로 지정하고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

기념일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자 함(안 제1 1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6·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6·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2(6·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) ① 납북자를 추모하고 국민적 관심을 제고 하기 위하여 매년 6월 28일을 6·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로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6·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 할 수 있고, 사업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<u>제11조의2(6·25전쟁</u> 납북희생자
	기억의 날) ① 납북자를 추모
	하고 국민적 관심을 제고 하기
	위하여 매년 6월 28일을 6・25
	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로
	<u>한다.</u>
	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6・
	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
	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
	시 할 수 있고, 사업 방법 및
	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
	령령으로 정한다.